

청렴교육

- 부정(인사)청탁 금지법,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, 공인신고, 교육공무원 행동강령,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

1 '금품등 수수 금지' 바로 알기

금품¹⁾등 수수 금지 알고 있나요?

○ 근거: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
○ 내용

-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
-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

※ 위반자 제재 내용

제재대상	제재의 종류
1회 1백만원(매 회계연도 3백만원)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	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	⇒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

○ 신고 처리 절차

- 소속기관장에게 신고(권익위·감독기관·감사원·수사기관 신고가능)
- 제공자에게 반환·거부 의사 표시(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)

< 예외사유 >

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-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*안의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
 - * 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 (단, 한시적으로 명절에는 농산물 및 농수산물공품 선물은 2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함), 경조사비 5만원(단, 화환 조화는 10만원)
-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- 공직자 등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)이 제공하는 금품 등
- 직원상조회·동호인회·동창회·향우회·친목회·종교단체·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-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체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·음식물 등
-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
- 그 밖의 다른 법률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
1)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(정의)에서 “금품 등”이란

가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 나.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통신 등의 편의 제공
 다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

☐ 선물 이럴 땐 가능 & 이럴 땐 불가능

○ 5만원 이하 선물(한시적 설 명절 농산물·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)이 가능해요!

- ① 목적: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
- ② 누가 누구에게: 하급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- ③ **이럴 땐 안되요!** 인사·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

○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어요.!

- ① 누가 누구에게: 공공기관이 → 소속공직자에게
- ② 얼마?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

- ① 누가 누구에게: **일반인이** →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
- ② 얼마? 100만원까지 가능

- ① 누가 누구에게: 공직자인 **직장 동료**가 → **직장 동료(상급자 포함)**에게
- ② 얼마? 100만원까지 가능
- ③ **이럴 땐 안되요!**

같은 부서 부서장, 인사·감사 업무수행 동료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하나, 인사·감사 기간 중에는 금지

○ **이럴 땐 선물을 할 수 없어요!** 📌 기억하세요 “직무관련성”

- ① 누가 누구에게: 민원인이 → **인허가** 담당 공직자에게
- ② 청탁금지법 **위반**입니다. (금액에 상관없이 금지)

- ① 누구에게 무엇을: **직무관련성**이 있는 공직자에게 **상품권** 등 유가증권*을
- ② 청탁금지법 **위반**입니다. (금액에 상관없이 금지)

*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

1. 사전예방활동 강화

가.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 운용

-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등 적법한 절차 준수
-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(학부모, 교원 등)

나.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홍보 강화

- 촌지수수 관련하여 학기 초, 스승의 날 전, 명절 전에 교직원 연수 및 가정 통신문 발송, 또는 전 학부모 대상 모바일 문자서비스 전송
 - 문자서비스 예시문 : 맑고 투명한 전북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학부모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시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연수 실시
-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내용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 홈페이지 탑재
-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

2. 처분기준 강화

- 가. 교육공무원이 촌지·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, 전라북도교육청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」 [별표2] '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'을 적용하여 처분

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

구 분	위법·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		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	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
	수동	능동	수동	능동	수동	능동
100만원 미만	중징계·경징계 의결 요구	중징계 의결 요구	중징계 의결 요구	중징계 의결 요구	중징계 의결 요구	중징계 의결 요구
100만원 이상	중징계 의결 요구					

- 나.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

- 다.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한 자체연수 및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대상

3.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리방법 안내

가.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**즉시 반환**

나. 금품 등이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,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,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**소속기관장(학교장) 또는 행동강령관(교감 또는 원감, 교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)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**

다.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

- 멸실·부패·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 ⇒ **폐기처분**
- 멸실·부패·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등 ⇒ **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**
-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 ⇒ 기관(학교)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**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**

4.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

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

- 홈페이지(www.jbe.go.kr)/정보공개.민원/민원신고센터/촌지수수.불법찬조금신고
- 촌지수수 신고(☎ 063-239-3297 교원인사과)
- 불법찬조금 신고(☎ 063-239-3576 예산과)

3
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다.

※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침해행위, 청탁금지법 위반행위, 채용비리 신고를 모두 포함

◎ 주요내용

1. 비밀보장
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.

⇒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2. 신변보호조치

-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.

⇒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

⇒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,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

3.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

-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·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.

4. 보호조치

-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)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.

⇒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※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

-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

5. 특별보호조치

-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.

6. 불이익조치 금지

- 신청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)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.

6. 책임감면

-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(공익침해행위)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, 면제가 가능.

7.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

-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: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,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
-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: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

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(교권보호)

전라북도 내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지속되어, 이에 법적·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,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존중·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교권침해의 유형

구분	교 권 침 해 유 형
학생	▪ 교원에 대한 폭언 ▪ 지시 불이행, 지도 불응
	▪ 명예 훼손(모욕, 허위 사실 유포) ▪ 수업 진행 방해
	▪ 교원에 대한 폭행
	▪ 교원에 대한 성희롱
	▪ 재물 손괴 ▪ 사이버 매체 폭력
학부모	▪ 교원에 대한 폭언
	▪ 교원에 대한 폭행
	▪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
	▪ 고소·고발
	▪ 안전사고(민원 제기, 신분 위협,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)

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

♣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

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,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 습관 개선,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♣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

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.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

-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(학생)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.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.
-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,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,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,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.
-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.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(학생)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.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,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교육활동침해,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

(보호자용)



✓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

가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3

교원에 대한
상해·폭행, 협박, 명예훼손, 손괴...
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요.

불법정보유통

담임교사가
...수감수감

할 전말요?
안되겠네.

교육활동 중인
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
불법정보유통행위,
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
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
나) 「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」 제2조

공무원행방해

아! #후/*^###*@ 드르르

영훈이 어머님,
수업시간인데..

교육활동 중인 교원의
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
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
것도 모두 안돼요.

업무방해

우리 아이가 실수한 거예요.
당장 점수를 올려 주세요.

상해: 7년 이하의 징역,
10년 이하의 자격정지
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교사에게
정신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

폭행: 2년 이하의 징역,
500만원 이하의 벌금,
구류 또는 과료

직접적인 폭행
(폭행시도도 포함)

명예훼손: 2년 이하의
징역이나 금고 또는
500만원 이하의 벌금

온라인 명예훼손

모욕: 1년 이하의
징역이나 금고 또는
200만원 이하의 벌금

욕설 등 모든 공격적 행위

학교 방문 절차

감정을 가라앉혀요.

전화나 서면으로
먼저 상담해요!

사실관계를
먼저 정확하게
파악해요!

**민원
제기
전에**

사전에 방문목적을 밝히고
면담 예약을 합니다.

행정실

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
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.

보호자와 교원의
목적은 같아요!
우리 아이들의 행복!

방문증을 패용하고
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.